보건복지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4.(화) 국무회의 종료 (별도 안내) 이후 | 배포 2026. 11. 23.(월)

12월부터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%→7% 인하

-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11.24.) -

-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, 환자 1인당 연평균 약 22만 원 경감 예상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%에서 7%로 낮추는**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**11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 **12월 1일부터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**산정특례*에 등록된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**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**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7%**를 부담하게 된다. 환자 **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약 22만 원 줄어들**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**연간 약 3천억 원**으로 추산된다.

*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과 암 등 중증질환이 대상이며,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

그간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(10%)은 암, 심뇌혈관질환 등 **다른 중증질환(5%)보다 높았다**.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발표한 「희귀·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」과 9월 발표한 「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」에 따른 **조치**로,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.

<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>

▲ 적용 대상 :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
▲ 본인부담률 :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10% → 7%
▲ 적용 시점 : 12월 1일 진료분부터
▲ 신청 여부 : 산정특례 등록 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진료비 낼 때 자동 적용
▲ 종전과 같은 항목 : 비급여 진료비, 입원 중 식대(본인부담 50%)
▲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
보건복지부는 이번 7% 인하에 이어 **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%까지 추가로 낮춰**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도 **암 등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**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.

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"희귀·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**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**"라며, "**12월 1일 진료분부터 낮아진 본인부담률이 빠짐없이 적용**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 안내와 청구 전산 반영을 마무리하고, **2028년 상반기 5% 인하도 계획대로 준비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<별첨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 <총괄>	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규 (044-202-2702)
<산정특례>	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44-202-2730)
		담당자	주무관	온성하 (044-202-27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